##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0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박충권·박준태·최수진

김선교 · 김태호 · 고동진

김위상 • 최은석 • 이만희

김승수 · 조은희 · 이인선

우재준 · 신성범 의원

(1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간 관례를 보면 획일적으로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고 있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 활동이나날이 중요해지는 환경 속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됨.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관인 위원의 위원장 호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① (생 략)	第5條(委員長) ① (현행과 같음)
②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	②
長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단서 신설>	다만, 법관인
	위원은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u>없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